

『구미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택시운송사업의 발전 및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시장의 책무(안 제4조)

-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

나. 재정지원 사업(안 제7조)

- 운임·요금결제시스템, 영상기록시스템 등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 개선사업
- 택시호출시스템, 택시 통신료 및 카드수수료 지원
- 브랜드택시 콜 수수료 지원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」,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,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, 「경상북도 택시 운송사업 지원 조례」, 「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-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- 본 「구미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 은,
 - 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의거하여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,
 - '22년 기준 택시업계에 재정지원사업(유가보조금, 카드수수료, 회선사용료 등)과 택시기계장비(블랙박스, 미터기 등) 교체보조금 지원 등 택시업계에 2,673백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으며 상위법상 근거는 있으나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,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